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30
----------	------

제출일자 : 2019. 8. 16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의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조)

나. 업무대행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총 10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군수는 절차에 따라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붙임)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본예산 204,000천원 반영

다. 기타

- (1) 부서합의 : 2019. 4(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8. 12.~ 9. 1(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에 관한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제5조(업무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총 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나 정신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1. 대행업무를 수행할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의료인이 확보된 경우
2.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업무대행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의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 ① 업무대행자는 제2조에 따른 대행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1. ~ 4. (생략)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 마. (생략)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妊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별 지】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업무대행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의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 추계 기간 : 2020년 ~ 2029년까지 10년간
- 추계 대상
 - 보건소 진료실 진료의사(전문의-내과 등) 1인 8,500천원/월
 - 보건소 예방접종실 예진의를사(전문의-소아청소년과 등) 1인 8,500천원/월
- 추계 비용 (2013년~2018년 평균 물가상승률 1.5% 반영)
 - 2020년 2명 x 102,000천원 = 204,000천원
 - 2021년 2명 x 103,530천원 = 207,060천원
 - 2022년 2명 x 105,083천원 = 210,166천원
 - 2023년 2명 x 106,660천원 = 213,320천원
 - 2024년 2명 x 108,260천원 = 216,520천원
 - 2025년 2명 x 109,884천원 = 219,768천원
 - 2026년 2명 x 111,533천원 = 223,066천원
 - 2027년 2명 x 113,206천원 = 226,412천원
 - 2028년 2명 x 114,905천원 = 229,810천원
 - 2029년 2명 x 116,629천원 = 233,258천원
 - ☞ 총 2,183,380천원
- 재원 조달 방안 : 군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4. 작성자 : 보건소장 박미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6차년도 (2025)	7차년도 (2026)	8차년도 (2027)	9차년도 (2028)	10차년도 (2029)	계
세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세출		204,000	207,060	210,166	213,320	216,520	219,768	223,066	226,412	229,810	233,258	2,183,380
업무 대행비 지급		204,000	207,060	210,166	213,320	216,520	219,768	223,066	226,412	229,810	233,258	2,183,380
재원 조달		204,000	207,060	210,166	213,320	216,520	219,768	223,066	226,412	229,810	233,258	2,183,380
의 존 재 원	소 계											
자 재 수 입	소 계	204,000	207,060	210,166	213,320	216,520	219,768	223,066	226,412	229,810	233,258	2,183,380
	지 방 세	204,000	207,060	210,166	213,320	216,520	219,768	223,066	226,412	229,810	233,258	2,183,380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 회계												
기타 (채무 부담, 민자 등)												

